

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 관련 **인지세 납부 안내**

**| 인지세 안내 |**

「인지세법」 제1조 및 제3조1항3호에 따라 **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서**는 **인지세 과세대상**이며,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신 후 **전자수입인지(종이문서용) 원본**을 옵션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.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(종이문서용)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|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 기한 |** ※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과세대상	납부기한	과세문서종류	기재금액	비고
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계약서	<b>계약체결 일월 10일까지</b>	3. 도급 또는 위임	<b>총 옵션 대금 (발코니 확장비 포함)</b>	매수인 보관

**| 인지세 세액 안내 |** ※ 「인지세법」 제3조 (과세문서 및 세액)

과세문서	기재금액(총 옵션대금 합계)	세액
3.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	1천만원 ~ 3천만원 이하	<b>2만원</b>
	3천만원 ~ 5천만원 이하	<b>4만원</b>
	5천만원 ~ 1억원 이하	<b>7만원</b>

**| 가산세 |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4(납부지연가산세)**

기간	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(과소)납부 세액의 <b>100%</b>	무(과소)납부 세액의 <b>200%</b>	무(과소)납부 세액의 <b>300%</b>

- ※ 전자수입인지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여야 하며, 등기 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납부기한은 **[계약 체결 일월 10일까지]**입니다.
- ※ 「국세기본법」 제5조(기한의 특례)에 따라 계약체결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기한으로 합니다.

**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**

**|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|** ※ **오프라인 (우체국 또는 시중은행) 방문시 현금결제만 가능**

1) 전자수입인지 포털사이트 접속 (<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>)

2)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4) 구매

- ① 용도 : **인지세 납부**
- ② 과세문서 종류 : **3. 도급 또는 위임**
- ③ 금액 : **해당 세액**
- ④ 건수 : **1건**
- ⑤ **확인 및 결제**



3)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



5)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(종이문서용)은 **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**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*(재발행 불가, 테스트출력 요망)**

